

**세르비아,  
→ 입국 정보  
24년 8/30 기준**

- 세르비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도착 후 24시간 이내에 지역 경찰에 등록해야 합니다. 호텔이나 유사한 숙박 시설에서는 등록을 대신 해주지만 개인 주택에 머물고 있다면 집주인과 함께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
- 한국 국민은 무비자로 180일 이내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.  
단, 90일 이상 체류를 원하면 세르비아에 머물고 있는 곳의 관할권이 있는 지역 경찰에 임시 거주 허가(비자)를 신청해야 합니다. 자세한 내용은 세르비아 내무부 사이트 ( <http://www.mup.rs/wps/portal/en/ministry> 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 
참고로 제출 서류 중 한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들 경우에는 영어 공증 번역 후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.

예) 세르비아에 90일 체류 후 주변 제3국(크로아티아, 헝가리 등)으로 출국해 바로 재입국하면 90일 체류가 가능합니까? 불가능합니다.

출입국사무소에서는 재입국일부터 180일을 역산해서 그 기간동안 90일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을 경우 불법체류자로 판단해 법원으로 출두하도록 합니다. 판결에 따라 벌금 부과 및 납부 후에 출국이 가능합니다. 또한 불법체류내역이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추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장기 체류가 필요하시면 반드시 해당 비자를 받고 입국하셔야 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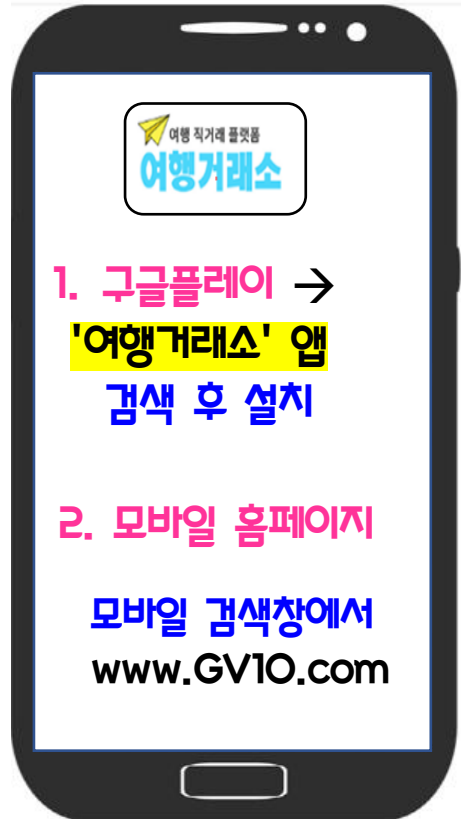
○ 세르비아는 코소보 정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. 국경에서 세르비아 입국 스탬프 없이 코소보에서 세르비아로 입국 하는 여행자에게는 입국을 허가하지 않습니다.

예) 항공편을 타고 세르비아에 도착 후 제3국을 거치지 않고 코소보로 직접 운전해 가는 경우 코소보에서 바로 세르비아로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.

예) 육로나 항공편을 이용해 제3국(세르비아 제외)에서 코소보에 도착한 후 육로를 통해 세르비아로 여행하려는 경우, 먼저 몬테네그로 또는 북마케도니아와의 국경을 거쳐 코소보에서 출국한 다음 세르비아와의 국경을 통과해야 합니다.

출처 : 주 세르비아 한국 대사관 ( 240830 )

## 갤럭시 폰에서



**모바일 검색창에서**  
**모바일 홈페이지**  
[www.GV10.com](http://www.GV10.com)

- 최신 각국 출입국 정보
- 다양한 여행상품 원가 정보
- 항공상식 및 항공사 정보
- 현지 생생정보
- 여행관련정보를 가장 빠르게
- 맞춤정보를 고객에게 전달하세요 !!

## 아이폰에서

